

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2001. 8. 3	조례 제 345호
개정	2001. 12. 12	조례 제 361호
	2005. 10. 5	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	2010. 11. 12	조례 제1114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5. 14	조례 제1821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1. 7. 29	조례 제2164호
일부개정	2023. 4. 27	조례 제2401호(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용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0. 11. 12, 2018. 5. 14>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5. 14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8. 5. 14, 개정 2021. 7. 29>

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
2.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
3. 삭제 <2021. 7. 29>
4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
5.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8. 5. 14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8. 5. 14>

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7. 10. 2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05. 10. 5, 2018. 5. 14, 단서신설 2021. 7. 29>

1.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
 2.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,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,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
 3.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
 - 가. 해당 분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
 - 나.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
 - 다.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
 - 라.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-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- 바.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 5. 삭제 <2018. 5. 14>
 6. 삭제 <2018. 5. 14>
 7. 삭제 <2018. 5. 14>
-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

보지 않는다. <신설 2023. 4. 27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5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, 2021. 7. 29>

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6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문안전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전의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10. 11. 12, 개정 2018. 5. 14>

제7조(소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·심의사항 및 규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 다만,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⑤ 소위원회의 자문·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·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8조(회의소집)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,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9조(심의의결)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.

③ 삭제 <2010. 11. 12>

④ 위원회는 자문·심의 등에 대하여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10조(안건설명)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,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술검토)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당해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당해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기술자문대상) 위원회의 기술자문(이하 “자문”이라 한다)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1. 12, 2018. 5. 14>

1.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

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(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)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

2.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
3.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써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
4. 삭제 <2018. 5. 14>

[제목개정 2018. 5. 14]

제13조(자문요청)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1.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
2.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,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,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
3.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
4. 사전 자체 심사자료
5.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
6.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(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)
7. 공법,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
8.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

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1. 설계변경도서
2.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

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

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,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⑤ 제7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한다. 다만,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문사항 사후관리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·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련기관·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15조(비밀유지)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일비, 여비 및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 및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10. 11. 12, 2012. 12. 11, 2018. 5. 14>

제17조 삭제 <2018. 5. 14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2. 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10. 11. 12 조례 제11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0 까지 생략

④1 「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④2 부터 ④3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7. 29 조례 제216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

서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.

부칙 <2023. 4. 27 조례 제2401호,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설계자문(심의)요청서

〈 표 지 〉

건 명	
-----	--

20

요청기관명	
설 계 자	

설계자문(심의)요청서

「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 자문(심의) 요청합니다.

1. 공 사 명 :
2. 공 사 개 요 :
3. 공 사 위 치 :
4. 소 요 사 업 비 :
5. 착공예정년월일 :
준공예정년월일 :
6. 설계상특기사항 :

20

신청인 (인)

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

(앞면)

공 사 설 명 서

의안번호	㉑				
공 사 명	㉒ 한글 35자 이내(이하 자 수만 표시)				
사업구분	㉓		요청구분	㉔	
발주기관	㉕				
공 종	㉖		공사구분	㉗	
공사개요	㉘				
위 치	㉙				
용역기간	㉚	년	월	일 ~	년 월 일
공사기간	㉛	년	월	일 ~	년 월 일
총공사비	㉜ 천원		용역비	㉝ 천원	
자료보관	㉞				
문서번호	㉟		의결구분	㊱	
요 청 일	㊲		심 의 일	㊳	
첨부서류	㊴				
설계회사	㊵				
심사의원	㊶				
분야별 책임 기술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증명칭	참여 분야	참여 기간
	㉟-1	㉟-2	㉟-3	㉟-4	㉟-5 // ~ //
					// ~ //
공사내용 및 기타사항					

기타사항

※ 참고 : 고딕체 부분(의안번호㉑, 문서번호㉟, 요청일㊲, 심의위원㊶)은 기입하지 않음.

(뒷면)

공사설명서기입방법

- ㉠ 의안번호 : 의안번호를 기입한다.
연도 - 차수를 기입 예) 95-13
- ㉡ 공 사 명 : 공사명을 기입한다.
- ㉢ 사업구분 : ‘일괄’, ‘실시설계·시공’, ‘기타’공사를 기입한다.
- ㉣ 요청구분 : ‘기본설계’, ‘실시설계’, ‘원안설계’, ‘대안설계’를 기입한다.
- ㉤ 발주기관 :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.
정부수신처 기호표를 참조
- ㉦ 공 종 :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.
- ㉧ 공사구분 : ‘토목’, ‘건축’, ‘기전’을 기입한다.
- ㉨ 공사개요 :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. 적용공법 등을 기입
- ㉩ 위 치 :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.
- ㉪ 용역기간 :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.(년월일로 기입)
- ㉫ 공사기간 :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.(년월일로 기입)
- ㉬ 총공사비(용역비) : 공사(용역비) 총 금액을 기입한다.(천원단위로 기입)
- ㉭ 자료보관 :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.
- ㉮ 문서번호 :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.
- ㉯ 의결구분 : 심의결과를 기입한다.
‘조건부채택’, ‘재심의’, ‘설계적격’, ‘설계부적격’, ‘대안채택여부’를 기입한다.
- ㉰ 요 청 일 :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.(년월일로 기입)
- ㉱ 심 의 일 :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.(년월일로 기입)
- ㉲ 첨부서류 :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.
- ㉳ 설계회사 :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.
- ㉴ 심의위원 :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.
- ㉵ 분야별 책임기술자
 - ㉵-1 성 명 :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.
 - ㉵-2 주민등록번호 :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.
 - ㉵-3 자격증 번호 :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.
 - ㉵-4 참 여 분 야 : 참여분야를 기입한다.
‘총괄’, ‘조경’, ‘토목’, ‘건축’, ‘전기’ 등을 기입한다.
 - ㉵-5 참 여 기 간 :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.(년월일로 기입)
- ㉶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: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설계변경자문(심의)요청서

「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심의를 요청합니다.

1. 공 사 명 :
2. 공 사 개 요 :
3. 공 사 위 치 :
4. 소 요 공 사 비 :
5. 당초 설계 금액 : (증감)
변경 설계 금액 :
6. 착 공 년 월 일 :
7. 준공예정년월일 :
8. 계 약 업 체 명 :
9. 변 경 사 항 :
10. 변 경 사 유 :

20

신청인

(인)

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조치결과서

위 원	지적내용	조치내용	담당과장 검토	심의위원 확인	비 고
			소속	소속	
			직위	직위	
			성명 (인)	성명 (인)	

- 주) 1.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
 2.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
 3.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의 검토 확인 후 각 항목별로 서명 날인

[별지 제4호서식]

자문(심의) 의견

○ 안건명 :

상기안건에 대한 자문(심의)의견을 다음(붙임)과 같이 제출합니다.

20

위원 (인)

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